

주요국의 공정거래제도 운영

본 협회 조사부

미국

미 법무부, 달라스 하프 공항 독점으로 아메리칸 에어라인사 제소

미국 법무부는 미국 제2위의 항공회사인 아메리칸 에어라인사가 달라스 헉드와스(DFW) 국제공항을 이착륙하는 항공여객서비스를 독점, 또는 독점을 기도하였다 하여 동사를 제소하였다.

법무부 반트러스트국은 아메리칸 에어라인사가 동사의 노선에 대하여 과도하게 증편하거나 요금을 인하하여 시장을 포화시킴으로써 신규로 참입한 소규모항공회사를 DFW공항으로부터 축출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하여 이를 문제시한 것이다. 신규참입자를 축출한 후에 동사는 다시 높은 요금을 설정하고 서비스 수준을 떨어뜨렸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사는 미국 3위의 DFW공항에서 우월한 지위를 가짐으로써 직행여객의 70% 이상을 수송하고 있다.

「항공산업에서의 경쟁은 사업 및

가정생활을 위한 여행을 항공에 의존하고 있는 수백만 여객에게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번의 제소는 소비자를 위한 것이다. 즉,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렴한 항공요금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자넷 리노 법무장관은 언급했다.

1978년의 규제완화 결과 대형항공회사는 그의 운행을 집중시키기 위하여 하푸를 설정하였다. 하푸 항공회사는 경쟁이 거의 없거나 아주 없는 노선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요금을 요구하게 된다. 원가가 저렴한 항공회사가 어떤 노선에 참입하면 일반적으로 당해 항공회사는 요금을 인하하게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50% 이상의 인하를 제시함으로써 항공여객수를 현저히 증가시킨다. 운수성의 1996년도 연구결과에 따르면 원가가 저렴한 항공회사는 소비자로 하여금 매년 63억불의 절약을 가져오게 하고 있다 고 추정하였다.

「경쟁이 없으면 하푸 항공회사는 지배적인 노선에 대해서는 높은 운임을 요구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동시장에서 신규참입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하푸 항공회사의 약탈적 전략을 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

고 조엘 I. 크라인 반트러스트국장은 언급했다.

반트러스트국의 소장에 의하면 DFW공항의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스포크(하푸공항을 기점으로 한 노선)에서의 높은 요금은 많은 낮은 운임의 항공회사의 참입을 불러들였다는 것이다. 소장에 의하면 4개의 달러스 공항으로부터의 스포크, 즉 캔사스주 위치타, 미조리주의 캔자스씨티(밴카드항공),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싼제트사), 콜로라도주의 콜로라도 스파링스(웨스턴 패시픽사) 등의 노선에 참입한 밴카드항공, 싼제트사 및 웨스턴 패시픽사에 대한 동사의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원가가 저렴한 항공회사가 운행을 개시할 때에는 요금을 극적으로 저하하고 여객수는 증가했다.

어떤 경우이든 원가가 저렴한 항공사가 그의 노선에서 축출되거나 또는 운행이 대폭 축소될 때까지 아메리칸 에어라인사는 증편과 얇은 요금의 병행을 구사하였다. 소장에서 아메리칸 에어라인사는 추가된 운행비용이 추가수입을 상회함으로써 동사의 행위가 약탈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운행을 중단한 후 높은 운임을 부과함으로써

앞에서 말한 일시적 손실을 만회하려고 하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일단 원기가 저렴한 항공회사가 달拉斯공항 노선에서 철수당하면 대개 독점 당시 수준으로 서비스를 낮추고 요금을 인상하였다. 예를 들면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달라스에서 위치타 사이의 요금을 행가드사가 퇴출한 후에 50% 인상하였다. 당해 노선을 이용한 여객수는 급격히 줄고 그래도 여행을 한 여객은 상당히 높은 운임을 지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일으킨 경쟁 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사는 달拉斯공항에서의 신규참입에 대응 채산성이 없는 비행기편은 추가시키는 것을 중지하지 않을수 없었다.

본간 소추는 캔사스 주의 위치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되었다. AMR사와 동 자회사인 아메리칸 에어라인 및 AMR Eagle Holding Corporation은 피고로써 이름이 올라있다. 모든 피고가 텍사스주 훠드워스의 DFW공항에 본사를 둔 법인이다.

■'99. 5. 13. 미국 법무부 발표

미 법무부, Aetna사의 Preidential Health Care 취득 인가

의사단체 및 소비자보호단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 연방정부는 6월 21일 10억 달러 규모인 Aetna Inc. 의 Prudential Health Care사 취득을 인가하였는데, 이로써 미국 최대의

관리의료회사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6개월간의 심사를 마친 후, 법무부 반트러스트국은 Aetna사가 댈러스-포트워스 및 휴스턴 지역시장에 소재하고 있는 NYL Care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을 매각한다는 조건으로 당해 기업결합을 인가하였다. 이 자산매각 - 연방정부와 텍사스 주정부가 제기한 민사소송의 화해를 가져올 동의명령의 핵심임 - 으로 인해 Aetna사는 42만 5,000명의 가입자를 잃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etna사는 2,100만명 이상의 개인에게, 즉 11명의 미국인 중 1명꼴로 의료혜택을 제공할 것이다.

당해 취득은 의사단체 및 소비자단체로부터 비난을 받아 왔는데, 이들은 기업결합의 결과 새로이 탄생할 기업의 시장력에 대해 우려하였다. 당해 기업결합이 완성되면 Aetna사는 일부 주요 대도시 지역에서 종합건강 관리기관 시장의 30% 내지 60%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Aetna사가 자산을 매각하여야 하는 텍사스 시장을 보면, 당해 취득이 원안대로 이루어졌다면 동 회사는 휴스턴 지역시장의 63%를, 그리고 댈러스-포트워스 지역시장의 42%를 지배하게 되었을 것이다.

Aetna사는 작년 12월 미국의 Prudential Insurance Co.로부터 Prudential Health Care사를 10억 달러로 취득한다고 발표하였었다.

이에 비판적인 인사들은 정부에 대하여 당해 기업결합에 더 많은 조건을 부과하여 줄 것을 청원하였는데, 이들은 이 기업결합이 수수료, 그리

고 의사와 병원들에 대한 작업규칙을 협상할 Aetna사의 능력을 증대시켜, 동 회사는 의료적 종사자들을 압박하여 비용절감액을 증대시키는 반면 보험료 인상과 시장지배적 행위를 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환자들 및 의사들에게는 불행한 일로서, 이 기업결합은 의료 산업에서의 단일한 거대기업이 전 산업을 지배하게 됨을 의미한다”라고 캘리포니아 주 산타모니카에 소재한 소비자단체인 Consumers for Quality Care의 소장인 Jamie Court는 말하였다. “의사들은 더 많은 불만을 갖게 되고 환자들은 이용가능한 서비스가 줄어들 것이다.” Court는 당해 결정이 “환자 보호 측면에서는 클린턴 행정부의 오점”이라고 하였다.

미국의학협회장인 Nancy Dickey 박사는 법무부가 요구한 당해 자산매각은 “중요한 첫걸음”이지만 “문제의 끝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해 Aetna사는 관련시장의 대부분을 지배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Dickey 박사는 언급하였다.

관리들은 6월 21일 Aetna사가 활동하고 있는 다수의 여타 시장에서 정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은 Aetna사의 시장에서의 존재가 이미 큰 규모이며 제안된 기업결합에 의해 이 상태가 상당히 바뀌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더욱이 연방법률에 의하면 이들은 제안된 기업결합의 영향을 검토할 권한을 부여받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번 화해는 보건의료산업의 모든

부문에서 경쟁을 보전하려는 법무부의 결의를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요구한 자산매각은 두 가지 중요한 효과를 가질 것이다. 첫째로 이는 경쟁을 보전하고, 종합건강관리기관 및 이에 기초한 의료서비스의 가격 인상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게 될 것이다. 또한 당해 자산매각은 Aetna사에 대해서 의사들에게 지급되는 보험료를 부당하게 낮추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환자들에게 행해지는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이 손상될 가능성을 제거하고 있다.”라고 법무부 반트러스트국장인 Joel Klein은 언급하였다.

6월 21일 댈러스 지방법원에 제기된 소에서 연방정부와 텍사스 주정부는 Aetna사의 Prudential사 취득은 휴스턴과 댈러스 지역의 경쟁을 제거할 것이며, “결합된 기업이 이로써 서비스의 가격을 인상하고 품질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당해 소장은 또한 텍사스 주 내의 기업결합부분에 대하여서도 이것이 Aetna사에게 다수의 의사들에 대한 지나친 지배력을 부여함으로써, 보험회사와의 분쟁시에 이들이 매우 불리해진다고 하여 제소하였다.

Aetna사의 임원들은 내키지 않지만 텍사스 주의 종합건강관리기관 일부를 분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였다.

“비록 우리는 당해 취득의 영향에 대한 법무부의 우려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자산매각이 포괄적인 법무부 기업결합심사절차를 종료시키는 가장 편의적인 방법이었다”라고 Aetna사의 회장이자 최고경영자인 Richard Huber

는 언급하였다.

다른 임원들은 당해 매각이 있은 후에도 Aetna사는 텍사스 시장에서 주도업체로 남아 있을 것이며, 100만 명의 종합건강관리기관 가입자를 포함하여 250만명의 의료보험 가입자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기업 임원들은 적어도 기을 때까지는 기업결합 심사절차가 계속될 것이지만 이번 여름까지는 당해 기업결합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6개 주 -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조지아, 뉴저지, 뉴욕 및 텍사스 - 는 당해 취득에 대하여 아직 검토중이며 이에 대해 추가적인 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다.

미국의학협회의 Dickey 박사는 동 단체의 주 지부들이 주 규제당국에 대하여 당해 기업결합을 심사하여 줄 것을 압박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Aetna사의 임원들은 동 기업의 여타 부문을 추가로 매각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이는 우리가 상정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동 회사의 대변인인 Patricia Self는 언급하였다.

■ '99. 6. 22, The New York Times

Albertson's사와 American Store사, 기업결합 성사 위해 145개 점포 매각

Albertson's Inc.와 American Stores Co.가 발표한 6월 22일 145개 점포의 매각계획은 다른 주요 슈퍼마켓 체인

들이 신규시장으로 진입하고 독립적 사업자들이 주요 도시지역에서 새로운 점포를 개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캘리포니아 주의 경쟁환경을 상당히 바꾸게 될 것이다.

Albertson's사는 동 기업이 계획하고 있는 American Stores사의 취득에 대한 반트러스트 인가를 얻기 위해 117개 점포의 매각에 동의하였는데, American Stores사는 Lucky 및 Supersaver 체인을 보유하고 있다. 28개 점포에 대한 추가적 매각도 뉴멕시코 주와 네바다 주에서 진행중이다.

38개 주에서 2,400개 점포를 보유한 미국 제2위의 식료품점 체인을 탄생시키게 될 이번 기업결합은 슈퍼마켓 사업에서의 시장집중의 증가로 인해 소비자들의 선택폭 감소가 결과될 것이라는 일부 관측통의 우려를 증대시키고 있다.

이번 자산매각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소매업체에 대해 요구한 것으로는 사상 최대규모의 것이며, 지난 8월 공표되었던 이들 2개 식료품점 체인 대기업간의 기업결합에 대한 마지막 장애물이다. 이로써 이 기업 결합은 6월 23일 자정 이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FTC 및 여러 주정부 법무장관들과의 합의내용에 따르면, 31개 점포가 Commerce에 소재한 캘리포니아 주 공인 식료품점 단체에 매각될 것이며, 이 단체는 이후에 이들 점포를 Gelson's, Jons 및 Top-Value와 같은 독립적 식료품점 체인 회원사들에 매각할 것이다. 27개 점포는 슈퍼마켓 사

업자인 Raley's Inc.에 매각될 것이며, 40개 점포는 Compton에 소재한 Ralphs Grocery Co.에, 43개 점포는 Colton 지역의 Stater Bros.에, 그리고 4개 점포는 Vons Cos.에 매각될 것이다. FTC 지침에 따르면 이들 모든 점포는 앞으로 4개월 내에 매각되어야 한다.

"Ralphs사는 한동안 북부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업을 확장할 기회를 노려 왔으며, Albertson's사와 American Stores사간의 기업결합으로 인해 우리는 대규모 사업확장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Ralphs사의 대변인인 Terry O'Neil은 언급하였다.

신시내티에 소재한 Kroger Co.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체인은 Bay Area에 소재한 31개 점포를 취득할 것이다. 동 업체는 이들 중 3개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캘리포니아 점포를 Ralphs사의 이름으로 운영할 것이다. 기타 점포는 FoodsCo 창고형 매장이 될 것이다.

이번 자산매각은 주로 Inland Empire에 소재하고 있는 Stater Bros. 사에 가장 큰 이득이 될 것이다. 동 업체는 규모가 거의 40% 증가할 것이다. 이로 인해 동 업체는 로스엔젤레스와 오렌지 카운티에서의 영업활동이 더욱 증대될 것이다.

"우리는 연간매출액 19억 달러의 회사에서 90일만에 24억 달러의 회사로 탈바꿈할 것이다"라고 Stater Bros. 사의 최고경영자인 Jack Brown은 말하였다. "이는 우리에게 더욱 커다란 구매력을 안겨줄 것이다." 동 체인은 새로이 취득하는 점포들을 45일 내로

자신의 포맷에 맞게 전환하게 될 것이다.

Brown은 취득대상인 이들 점포의 근무자들은 자신들의 일자리, 임금 및 연공서열을 유지할 것이라고 하였다.

Albertson's사의 대변인인 Michael Read도 이들 매각되는 점포들의 근무자들이 새로운 소유주들로부터 일자리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자산매각의 결과로 일자리가 상실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그는 말하였다.

이번 기업결합에 관련된 모든 슈퍼마켓 체인의 근무자들을 대표하는 United Food and Commercial Workers International Local 770의 회장인 Richard Icaza는 대량해고는 없을 것 이지만 현재의 슈퍼마켓 체인 대형화 추세는 경쟁을 해치게 된다고 하였다.

"더 적은 수의 체인들이 더 많은 점포를 갖게 되면 소비자 및 근무자들에게는 경쟁이 줄어드는 것이다. Albertson's사와 Ralphs사는 모든 점포에서 동일한 임금과 연금을 지급한다. 단지 3~4개의 체인이 있다는 것은 진정한 경쟁의 종말을 부른다."라고 그는 말하였다.

Albertson's사는 American Stores사를 취득하기 위해 98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제공하고 34억 달러 규모의 채무를 인수하게 된다. 게다가 대단한 규모의 자산매각이 겹쳐지면 이 기업결합은 더욱 비용이 많이 드는 거래가 된다고 분석가들은 말하고 있다.

Albertson's사가 8월에 당해 취득을 발표하였을 때, 동 체인은 규제당국의 인가를 얻기 위해 약 80개 점포를 매각할 것으로 예상되었었다. 그러나 FTC의 인가에 필요한 대기기간이 길어면서 대다수 전문가들은 매각대상 점포의 추정치를 120개 점포로까지 올려잡았다.

"다소의 차질이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그들은 이 기업결합을 발표할 때 비용 측면에서 다소 보수적이었던 것 같다. 나는 당해 기업의 성장기능성에 여전히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세인트루이스에 소재한 Edward Jones사의 식료품점 분석가인 Patrick Schumann은 말하였다.

■ '99. 6. 23, Los Angeles Times

미 법무부, 미-일간 해저 케이블 사업 조사중

미국 법무부는 AT&T Corp. 및 여타 통신회사들이 10억 달러 규모의 미-일간 해저 케이블사업을 이용하여 새로운 통신회사인 Global Crossing Ltd.로부터의 경쟁을 억압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중이다.

Global Crossing사의 이의신청을 받아 법무부는 최근, AT&T 그룹의 일부인 Sprint Corp. 및 MCI WorldCom을 포함한 기업들에게 공식적 정보요구서를 발부하였다.

반트리스트 집행당국은 "국제 해저 케이블 산업에서의 반경쟁적 관행의

존재가능성을 살피고 있다”고 법무부 대변인인 Gina Talamona는 말하였다.

당해 조사는 인터넷 통신이 가져온 호황으로 인한 주요 변화를 이미 겪고 있는 이 산업에 기밀층의 충격을 가할 수 있다. Global Crossing사, 그리고 투자자 중에 Bell Atlantic Corp. 같은 업체들이 포함되는 Flag Ltd.는 AT&T사 및 일본의 NTT사와 같은 기존기업들의 연합체가 보유하고 있는 통신회선으로 국제 통신부문에서 경쟁하고 있다.

설립된 지 2년 되었고, 버뮤다에 설립등기가 되어 있으나 로스앤젤레스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Global Crossing사는, 33개 회원사로 이루어졌으며 AT&T사를 주축으로 하는 그룹 - Japan-US Cable Network로 알려짐 - 이 당해 회선에서 고객 확보를 위해 경쟁할 공정한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Global Crossing사는 당해 연합체가 일본 회원사 중 2개사 - KDD Corp. 및 일본의 선도업체인 NTT - 가 누리고 있는 독점에 가까운 상태를 이용하여 소규모 통신회사들로 하여금 당해 연합체에 가입하고 Global Crossing사를 외면하도록 강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Japan-US Cable사는 연방통신위원회(FCC)로부터도 유사한 주장에 직면하였는데, 동 위원회는 당해 그룹에 대해 이 사업에 대해 필요한 인가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준비중이다. Japan-US Cable사의 변호사인 Phil Verveer는 며칠 내로 인가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그들

은 실제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이는 반트러스트국이 조사를 완료하면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있다.”라고 Verveer는 FCC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Global Crossing사는 미-일간 해저 케이블을 이용하여 내년 3월에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동 회사는 회선이 내년 중반 이전에 준비될 것이라고 하여 온 Japan-US Cable사와 고객 확보를 위해 경쟁하게 될 것이다.

이들 고속 해저케이블은 수백만 통의 전화통화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으며 미국과 일본간의 전화 및 인터넷 통신량을 늘릴 수 있다. 1998년 5월, Global Crossing사는 미국과 영국을 연결하는 케이블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전세계 100개 도시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상하고 있다.

■ '99. 7. 1, Los Angeles Times

미 법무부, Cargill사의 Continental Grain사 취득 인가

Cargill Inc.가 Continental Grain Company사의 곡물 사업부문을 취득하려는 계획은, 농민들이 경쟁적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Cargill사가 9개 도시에서의 사업부문을 매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법무부의 인가를 받았다.

“이번 자산매각이 없었다면 다수의

미국 농민은 주요 농작물의 수매가격 인하에 직면하게 되었다”라고 법무부 반트러스트국장인 Joel Klein은 밝혔다.

미국 최대의 곡물회사인 Cargill사는 항구 내, 그리고 하천유역의 여러 종류의 곡물용 기중기 매각에 관한 동의명령을 준수하였다. 중서부 지방 의원들 및 농민단체들은 Cargill사의 취득 계획이 일부 지역에서의 경쟁을 일소하여 버릴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미네소타 주 Wayzata에 소재하고 있는 Cargill사는 미국 최대의 곡물회사이며, 뉴욕에 소재하고 있는 Continental사는 미국 제2위의 회사이다.

반트러스트 당국은 Cargill사가 캔ساس 주 Salina에 소재하고 있는 Continental사의 철도터미널 및 미조리 주 Birds Point에 소재하고 있는 하천유역의 기중기 매입을 금지하였다.

Cargill사는 시애틀, 텍사스 주 Beaumont, 캘리포니아 주 Stockton 및 시카고에 위치하고 있는 Continental사의 항구 내 기중기 매각에 합의하였으며, 또한 미조리 주 Caruthersville, 일리노이 주의 East Dubuque, Morris 및 Lockport 3개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하천유역의 기중기도 매각할 것이다. Cargill사는 또한 일리노이 주 Havana에 위치한 자사의 하천유역 기중기의 1/3을 경쟁업체들에 개방하기로 합의하였고, 오하이오 주 Troy에 소재한 철도터미널도 매각할 것이다.

■ '99. 7. 9, The New York Times

영 국

볼보사, OFT 조사 이후 자동차 가격설정 카르텔 관여 시인

볼보사 영국법인은 영국에서의 자동차가격 고정을 위한 비밀합의를 지원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이 시인은 볼보 자동차 판매업체들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할인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한 합의의 증거를 발견한 공정거래청(OFT)의 조사에 뒤이어 나온 것이다.

Volvo Car UK Ltd - Buckinghamshire 주 Marlow에 소재하고 있음 - 는 John Bridgeman 공정거래청장에게 송부될, 자동차 판매업체들이 운영하는 가격고정 카르텔을 지지하지 않을 것임을 보증하는 서신에 서명하였다.

Bridgeman 청장은 9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이는 매우 불명예스러운 사건이다. 존중의 대상인 한 주요 자동차회사가 가격을 고정하는 자동차 판매업체들과 담합하였으며 이에 동참하지 않는 유통업체에게는 벌칙을 가하였다. 이는 영국법률에 대한 무시 및 소비자들의 피해취에 대한 무관심을 예증하고 있다. 영국 소비자들은 왜 자신들이 구입하는 자동차가격이 높은지 의문을 가져 왔다. 볼보 자동차의 경우 그 답은 이제 더욱 명확해졌다: 판매업체들이 볼보 사의 후원 하에 은밀히, 그리고 냉소적인 태도로

가격고정에 합의한 것이다.”

개인 구매자 및 일괄구매자들에게 적용가능한 할인 수준을 제한하기 위한 판매업체들간의 합의의 증거가 발견되었다. 추가적인 증거들은 볼보사가 판매업체들이 일정 할인 수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이 할인 수준의 준수를 보장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볼보 사가 시장에서의 자사의 위치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판매업체 및 수수료 구조를 도입하기 위한 결정에 뒤이어 발생하였다. 판매업체들간의 일련의 회의계획이 볼보사의 부장들에게 통보되었으며 이들은 판매업체들이 장래의 영업전략을 논의하도록 맡겨두었다. OFT가 입수한 증거들은 볼보사가 후원하였다 고 인정한 합의들이 이러한 회합에서 작성된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John Bridgeman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볼보사 영국법인이 카르텔 참여를 시인하도록 만든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에는 OFT 직원들의 거의 1년 간의 수고스러운 작업이 필요했다. 나는 이 문제의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이 사건을 제한적 관행 법원에 회부하기보다는 장래의 행위에 대한 보증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모든 볼보 자동차 판매업체들은 장래의 그들의 행동에 대하여 경고를 받았다. 현 경쟁법에 따르면 법원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당사자들이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내년 3월 1일 이후에는 이 문제는

이렇게 처리되지 않을 것임을 산업계는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그 때의 조사권한은 상당히 강화되어 있을 것이며 그러한 활동의 즉각 종료를 명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더욱이 가격고정 합의에 관한 금지규정을 침해한 데 대해 영국 내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금액을 기업에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침해에 대하여 당사자들은 장래에는 중대한 벌칙에 직면하게 될 것을 각오하여야 한다.”

■ '99. 7. 9.

영국 공정거래청 보도자료

E U

유럽위원회, Rhodia사의 Albright & Wilson사 취득 인가

유럽위원회는 Rhône-Poulenc사의 자회사인 프랑스 회사 Rhodia S.A.(이하 “Rhodia사”라 함)의 영국 회사 Albright & Wilson plc(이하 “A&W사”라 함) 취득을 인가하였다. 두 당사자는 모두 화학사업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다. A&W사는 주로 인산염 및 계면활성제 제조부문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기업결합이 성사되면 Rhodia사의 매출액 130억 유로화와 A&W사의 전세계 매출액 11억 유로화가 통합된다.

기업결합이 성사되면 이 기업은 인산염 및 계면활성제의 주도적 공급업체가 될 것이다. 암모늄 및 인산칼슘에 대한 일정 응용제품 시장과 관련하여, 동 위원회는 이들 두 당사자가 모두 활동하고 있는 유럽 시장에서 경쟁상 문제를 적시하였다. Rhodia사는 상표권 라이센싱, 고객 목록의 공급, 비경쟁 조항과 기술사용료 조건부 제조계약 등을 통해 중첩 부문을 제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들 두 당사자는 인산염(정제 인산 및 인산염), 계면활성제, 인산계열 파생물질 및 아크릴 제조부문에서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트륨, 암모늄 또는 인산칼슘과 같은 다양한 범주의 인산염들이 각기 다른 제품시장을 구성하는 광범한 응용영역에서 다양한 등급으로 판매되고 있다.

동 위원회는 조사결과 인산염 및 계면활성제 관련 지역시장은 본질적으로 유럽 전역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들 당사자는 유럽시장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당해 기업결합은 소화분말, 비료제품 작용제, 구강보건제 및 발효제 등의 시장에서 경쟁상 우려를 야기하게 된다.

Rhodia사는 제기된 경쟁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동 위원회에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Rhodia사는 동 회사가 유럽 시장에서 현재 판매하는 양과 동일한 양의 암모늄 및 인산칼슘을 준속가능한 독립적 제3자가 사용료를 내고 제조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상표권 라이센스를 허여하며, 당해 제3자에게 고객목록을 제공하고 유럽위원회와 합의한 기간 동안 제3

자와 경쟁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서약으로 인해 상기 4개 유럽 시장에서의 중첩부문은 제거된다. 따라서 제출된 서약은 이들 시장에서 제기된 경쟁상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Rhodia사가 제출한 서약을 전적으로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동 위원회는 신고된 기업결합에 반대하지 않으며 이것이 공동시장과 양립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 '99. 7. 15.

유럽위원회 보도자료

기 타

APEC, 경쟁정책 공통원칙 작성

일본 및 미국,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가 가맹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회의(APEC)에서 카르텔의 방지 등의 경쟁정책에 관한 역내 공동의 원칙을 작성한다. 원칙으로서는 APEC 가맹 개발도상국·지역에 독점 금지법 등의 정비를 촉구함과 동시에 역내에 직접투자하는 외국기업에 차별적인 대우를 행하지 않을 것 등을 포함시키는 방향이 될 것이다. 각국 정부는 APEC의 발전에는 무역의 자유뿐만 아니라 직접투자의 확대로 이어지는 경쟁정책의 국제조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9월에 뉴질랜드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에서 정식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통원칙의 작성은 APEC 현 의장국인 뉴질랜드 정부가 최근 각국에 타진하여 왔다. 6월말에 뉴질랜드에서 개최되는 APEC 무역 장관회의에서 정식으로 제안한 후, 9월의 정상 회의에서 원칙의 내용을 분명히 할 방침이다. APEC 역내의 경쟁정책 정비의 필요성은 일본정부의 생각과도 일치하고 있어, 일본정부는 원칙 작성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공통원칙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완화된 내용으로,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 등 개도국이 자발적으로 독금법 등의 정비에着手할 것을 촉구할 것이다. 이러한 나라들에 일본 및 미국과 같은 수준의 법정비를 강요하면 강한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국제적인 카르텔 방지를 위해 역내의 협력추진 등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조정중이다. APEC 의장국인 뉴질랜드는 경쟁정책의 운용에 관하여 외자기업과 국내자본 기업을 공평히 취급하는内外무차별 원칙의 도입에 적극적이다. APEC 역내에서는 외자기업에 대하여 독금법 등이 엄하게 적용되고 있는 국가도 많아, 이것이 직접투자의 확대를 방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개도국 정부는 공통원칙의 작성에는 총론상으로는 반대하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다만 각론으로 들어가서는内外무차별 원칙의 도입 등에 대해 국내산업보호의 입장에서 저항하고 있어, 각국간 조정의 난항도 예상된다.

다.

APEC은 역내의 무역·투자의 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보고 선언을 1994년에 채택하는 등 무역 및 투자의 규칙 작성에는 착수한 상태이나 경쟁정책에 대하여서는 진척이 더디다.

■ '99. 6. 15. 일본경제신문

일 본

공취위, 수학여행요금 카르텔로 9개 여행사에 배제권고

오사카 부내 공립고교의 수학여행 요금을 둘러싸고 대형 여행사 등이 부당한 가격카르텔을 결성한 문제에 관하여 공정취인위원회는 6월 16일, JTB(일본교통공사) 등 9개사에 대하여 독점금지법 위반(부당한 거래제한)으로 배제권고를 내렸다. 이 중 6개사에 대하여서는 오사카 부내 공립 중학교의 수학여행에서도 카르텔을 결성하였다는 혐의가 있다고 하여 경고하였다. 수학여행을 둘러싸고 여행사들에 권고가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권고를 받은 업체는 JTB 외에 긴키(近畿)일본투어리스트, 일본여행, 메이테츠(名鐵)관광서비스, 도큐(東急)관광, 토부(東武)트래블, 한큐(阪急)교통사, 니시테츠(西鐵)여행, 케이한(京阪)교통사이다. 이들 중 메이테츠 관광서비스, 토부트래블, 한큐교통사

를 제외한 6개사가 경고를 받았다.

권고에 따르면 니시테츠여행을 제외한 8개사는 1997년 1월경 수학여행의 영업책임자로 구성된 「항상연구회」라는 명칭의 회합을 오사카 시내에서 개최, 저가수주를 방지하고 일정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준비요금」을 여행비용의 10%로 정함과 동시에 견적가격에 대하여서도 공통의 산정방식을 결정하였다. 니시테츠여행도 같은 해 4월경에 동 연구회에 참가, 규약을 승인하였다.

이들 9개사는 규약을 위반한 회사에 대하여는 연구회로부터의 「제명」 및 수주를 철회시키는 등의 벌칙을 부과, 회사들을 강력히 구속하고 있었다고 한다. 배제권고를 받은 9개사는 오사카 내의 공립고교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187개교의 수학여행을 주관하고 있으며, 1997년도의 거래액은 약 36억 엔에 달한다.

■ '99. 6. 17. 일본경제신문

공취위, 채무주식화에 대해 금융기관의 주식보유제한지침 완화

공정취인위원회는 산업재생 및 경쟁력의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연내더라도 독점금지법의 운용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독점법은 금융기관이 발행을 마친 사업회사의 주식을 원칙적으로 5% 이하로만 보유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채무면제를 받는 대가로 자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채무의 주식화」를 실시

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5%를 넘는 주식보유를 용인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예와 합쳐 지침에 포함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자력 재건이 어려운 사업회사를 구제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할 방침이다. 기업 결합의 심사절차도 예비심사에 해당하는 「사전상담」을 신속화하고, 과잉 채무의 처리 및 사업재편을 원활히 한다.

운용지침의 개정은 정부의 산업경쟁력 강화책에 뒤이은 조치로서, 네고로 아스치카(根來泰周) 위원장이 6월 22일 일본경제신문과의 회견에서 표명하였다.

금융기관의 주식보유를 제한하는 「5% 규칙」은 공취위가 인정하면 5%를 넘는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현행의 운용지침에는 채무의 주식화에 대한 규정이 없어, 5%를 넘는 경우 공취위는 개별 안건마다 심사한다고 하고 있었다. 한편, 산업재생에는 80조 엔에 달하는 과잉채무의 삭감이 급선무로서, 산업계로부터는 지침의 개정을 바라는 목소리가 강해져 왔다.

손수운 채무주식화를 인정하면 경영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네고로 위원장은 정부가 차기 입시국회에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신재건형 도산법제의 대상이 되는 경영부진기업 등에 한하여 5% 규칙의 탄력적 운용을 인정할 생각임을 시사하였다. 예를 들면 채무를 변제하면 운전자금이 없어져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등이 상정된다.

산업계에서는 아파트 최대건설업체인 하세코(長谷工) 코퍼레이션 및 종합상사인 카네마쓰(兼松)가 사실상의 채무주식화라고도 할 수 있는 재건계획을 내놓고 있다. 지침에 기준을 명기함으로써 기업은 채무주식화를 진행하기 손쉽게 된다.

기업결합심사절차에서는 사전상담을 신속화하여, 종래 3개월 이상 걸렸던 사례에서도 적극적으로 1~2개월 정도에 끝마친다. 동시에 기업결합계획의 독금법상의 문제점 등을 조속히 지적하여, 기업 측에 대응을 촉구할 방침이다. 사전상담은 기업이 기업결합계획에 대하여 독금법상 문제가 없는가를 공취위에 조회하는 제도로서, 대형 기업결합에서는 대부분의 기업이 이용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최근 전세계적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형 기업결합을 목표로 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공취위가 올해 4월에 인가한 도시바, 히타치제작소, 미국 제네럴 일렉트릭(GE)의 원자력연료 자회사의 기업결합계획에 대해서는 사전심사에 약 반년이나 걸렸다.

■ '99. 6. 23, 일본경제신문

투었던 킴몬제작소(도쿄 이타바시(板橋)구)에 대하여, 공취위는 7월 12일 동 회사의 주장을 기각하고 3억 2,887만 엔의 과징금 납부를 명하는 심결을 내었다.

심결에 따르면 공취위는 1992년 9월, 가정용 마이콤 미터기의 판매에서 최저가격을 결정하는 카르텔을 결성하였다고 하여 일본 가스미터기 공업회, 석유가스미터기 부회에 대하여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배제권고를 하였다. 1994년 3월에는 동 부회의 회원사 6개 사에 총액 약 17억 1,000만 엔의 과징금 납부를 명령하였는바, 킴몬제작소를 제외한 5개 사는 납부하였으나 동 회사는 금액에 불복하여 재심판을 청구하였다.

과징금의 산정률은 제조업의 경우 위반행위 기간 매출액의 6%가 되지만, 동 회사는 「가스미터기에 관하여는 도매업체로서, 과징금은 독금법 규정에 의해 매출액의 1%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심판은 「제조공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하며 다른 회사에 제품을 제조시켜, 자기의 상표를 사용하여 판매하고 있다」 등의 이유로 동 회사를 제조업으로 인정, 6%의 적용을 지지하였다.

■ '99. 7. 11, 일본경제신문

공취위, 가스계량기 카르텔 관련 킴몬(金門)제작소에 과징금

가정용 프로판가스의 누출방지용 미터기 판매를 둘러싼 암묵적 카르텔에 관하여 공정취인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금액에 불복하여 심판에서 다